

第97回(定期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5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9年 12月24日(金) 11時02分

議事日程(第5次本會議)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淸進區域 第6地區 都心再開發 區域(建築計劃)變更(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9. '99年度 運營委員會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10. '99年度 市民行政委員會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11. '99年度 財務建設委員會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洪起瑞議員 外 9人 發議) 2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8. 淸進區域 第6地區 都心再開發 區域(建築計劃)變更(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2面
9. '99年度 運營委員會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運營委員長 提出) 2面
10. '99年度 市民行政委員會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市民行政委員長 提出) 2面
11. '99年度 財務建設委員會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財務建設委員長 提出) 2面

(11時02分 開議)

○議長 洪承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開議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로 수

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로 아무 대과 없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오로지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운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

료의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보내고 새천년 한 세기를 맞이하는 날도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99년도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들의 금년도 의정활동이 오늘로써 사실상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20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오직 명예와 긍지만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한 경의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람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대망의 2000년의 새해에는 20만 종로구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區廳長님께서서는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洪起瑞議員 外 9人 發議)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 관한 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7.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8. 淸進區域 第6地區 都心再開發 區域(建築計劃)變更(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9. '99年度 運營委員會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運營委員長 提出)
10. '99年度 市民行政委員會 行政事務監查 結

果報告의 件(市民行政委員長 提出)

11. '99年度 財務建設委員會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財務建設委員長 提出)

(11時07分)

○議長 洪承台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 관한 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8항 淸進區域 第6地區 都心再開發 區域(建築計劃)變更(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의사일정 제9항 '99年度 運營委員會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의사일정 제10항 '99年度 市民行政委員會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의사일정 제11항 '99年度 財務建設委員會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행정감사결과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洪起瑞 運營委員長! 나오셔서 안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洪起瑞 運營委員會 委員長 洪起瑞입니다. 존경하는 洪承台 議長님과 吳錦南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IMF관리체제를 어느 정도 극복을 했었지만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기묘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모입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 한 해는 하시는 일 모두가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

리면 지방의회 의원을 경험하였던 전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시 터득하였던 의정활동의 다양한 경험이나 의원으로서의 대민봉사자세,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소신 등을 현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또 지방자치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 조사, 연구 등을 벌여 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육성 지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원 구성은 종로구의회 전임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의정회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구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그리고 종로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 홍보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종로구의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권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조례로 특정예산의 편성을 규정할 수 있는냐는 점과 본 의정회 인가 근거법인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규정은 예산결산은 인가청인 서울시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보조금을 시장이 아닌 구청장에게서 받는 관계로 부득이 예산·결산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심의를 요한다는 검토 보고가 있었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본 조례를 기이 제정하여 1억원의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은평구가 '99년 10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정회 육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시는 99년 12월 4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다른 집행기관과는 달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상태와 의정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드리면 '99년 11월 22일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에

서 감사계획서를 의결, 시달하였으며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주요 집행사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 및 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99년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의안처리 및 관리상태 그리고 진정서 접수 및 처리내용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상태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진정서 처리과정에 대한 소홀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5건을 적출, 개선 및 보완토록 하는 등 다가오는 새로운 새천년에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

(案) 審査報告書

'99年度 運營委員會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洪承台 洪起瑞 運營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 나오셔서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李憲九 市民行政委員會委員長 李憲九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잠시의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와 일반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7회 정기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적 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직을 기존 2명에서 17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1,242명을 1,259명으로 17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사회복지직의 추가 배치로 사회복지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생활체육 행정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생활체육 행정구현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인 행정관리분야 7급 상당 체육지도사의 일부 임용자격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 분야의 체육지도사 7급 상당의 임용기준 항목에 "4년제 대학의 체육특기자 졸업자로서 선수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4년제 대학의 체육특기자 졸업자로서 선수경력이 4년 이상인 자는 일반적으로 체육에 관한 재능과 조예가 깊은 자이므로 7급 상당 지도사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의 7급 상당 지도사 임용자격기준에 기이 규정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민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생활체육시설 제공 등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구민회관의 신축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사문화되었던 「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를 「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등 회관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구민회관은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인 바 수영장, 체육관, 탁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서울시 및 타구 구민회관의 요금수준과 동일하고, 대강당, 회의실 등 기본시설과 부속시설, 교육시설의 사용료는 타구와 대비, 중하의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 단서에서 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5조제3호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구민회관을 관리 및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관련 조례간 상충의 소지가 있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고 안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관련 「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는 수탁자 선정을 삭제하여 「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로 하였으며 이 밖에 (안) 제9조 제3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관련 조항의 인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삭제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관련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노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을 시행령 제27조에 신설된 분노 등 관련영업의 허가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며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과 조례 제20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인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신설 규정되었으므로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규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행정감시권을 최대한 발휘하였으며 집행부 측에서는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부서를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였으며, 1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겸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감사반은 시민행정위원 9명으로 편성하여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고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는 현장 사무실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국장 및 이사장 그리고 과장의 선서를 받고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류감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IMF 금융지원 체제하에 어려운 국가

운명을 헤쳐나가야 하는 중요한 때이므로 그 동안의 구정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각 부서별 '98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토대로 '99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점검하였으며 감사실시 현황 및 비위공무원 적출, 처분내역의 적정성 여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산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의 문제점, 인력풀타임 현황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반사항의 문제점,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태 및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착안점을 주안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처리요구사항 29건, 건의사항 26건을 적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 및 運營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99年度 市民行政委員會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市民行政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議長 洪承台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弼根 財務建設委員長! 나오셔서 안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建設委員長 吳弼根 財務建設委員會 委員

長 吳弼根입니다. 존경하는 洪承台 議長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묘년도 이제 저물어 대망의 21세기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때에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 많은 봉사와 희생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정기회 기간 중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1개월 가량의 장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 관계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이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새로운 시대의 경제도약을 위해 필요한 외국투자자의 유치나 벤처기업의 지원·육성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기타 현행 규정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경제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재산 매각, 대부 등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또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공유재산 대부로 최저요율을 적용하며 도시개발 촉진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시행지구 내 구유지 매각시 년 5%의 20년 년부매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민과 생활보호자에게 거주주택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새로운 시대의 경제도약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촉진하고 저소득 생활보호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현실적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목적은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는 일반 복지시혜사항과는 달리 증명수요자가 증명비용을 부담

하여야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그 동안 각종 수수료가 비용에 크게 미달되게 책정되어 있어 일반예산 일부가 수수료 비용으로 사용되어 결국 증명과 상관없는 일반 납세자의 세금이 수수료 비용에 투입되는 불합리가 초래되고 있어서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 이런 불합리를 시정코자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를 국정 실천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그 동안 적정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고 기 수수료를 조정한 8개 구청 요율 등을 참고하여 도매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안으로 일부 조정한 내용으로 그 세부내용은 현행 162개 수수료 중 요율 현실화 21개 종목, 현행 유지 21개 종목이며 징수근거법 개정으로 120개 종목을 폐지하고 행정정보공개법의 신규수수료 개정근거법 제정으로 61개 종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수수료 인상은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중요 사안이므로 인상의 필요성, 원가계산액, 물가상승률 타구의 인상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진구역 제6지구 도심재개발구역(건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진구역은 '79년 11월 22일 구역 지정되어 19개 지구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7지구와 19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번에 제6지구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건축변경계획을 작성 신청함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 결정된 연면적은 5만 4,952㎡에서 주차장과 부대설비공간 설치 등을 위한 지하 7개층 설치에 따른 4만 2,864㎡와 지상부 증가 4,675㎡를 포함하여 4만 7,539㎡가 증가한 총 10만 2,491㎡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당초 800%로 결정되었으나 대지면적의 약 20%인 1,389㎡를 공개공지로 설치함에 따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 및 건축조례에 의거 용적률 완화적용으로 80%가

증가된 880%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지역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공람공고 기간에 청진동 15번지 홍순호 외 주민 일부가 재개발계획을 반대하는 여론도 제기되었는 바 이를 반영하는 등 적법한 재개발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37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위원 9명이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방법은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장을 직접 출장하여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 2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報告書

清進區域 第6地區 都心再開發 區域(建築計劃)

變更(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99年度 財務建設委員會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財務建設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洪承台 吳弼根 財務建設委員長! 수고하

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 및運營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재무건설위원장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淸進區域 第6地區 都心再開發區域(建築計劃)變更(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年度 運營委員會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의 件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年度 市民行政委員會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의 件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9年度 財務建設委員會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의 件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99년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0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안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마치고 민생현안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기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時41分 閉會)

○出席議員 19人

洪承台	吳錦南	宣相善	鄭泰淳
李憲九	千相旭	丁炳煥	李炯述
金福同	崔康洵	玄壽漢	洪起瑞
金以煥	安載弘	李東奎	金正大
吳弼根	劉燦鍾	朴鍾植	

○出席關係公務員

區廳長	鄭興鎭
副區廳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財務局長	金賢植
生活福祉局長	董連浩
建設局長	吳鍾錫
保健所長	李星世